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2
----------	-----

제출일자 : 2006. 6. 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6.2.8)으로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 에서 “의정활동비” 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41,400천원 추가편성(당초 21,600천원 → 변경 63,000천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06. 5. 25 ~ 6. 1(7일간) ▷ 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15조의2” 를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15조의3” 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회기수당” 을 각각 “의정활동비”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 ----- ----- ----- ----- -----</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 3. (생략)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 ----- -----의정활동비--- 3. (현행과 같음)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생략) <p>②(생략)</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현행과 같음) <p>②(현행과 같음)</p>